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5. 18 선고 2020가단12155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(무허가)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4. 20.

판 결 선 고 2021. 5. 1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, 1) 하남시 E 잡종지 242㎡ 중, 가) 별지 도면 표시 17, 18, 19, 20, 21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ㄹ’ 부분 지상 목조 오두막 37㎡ 및 같은 도면 표시 32, 33, 34, 35,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ㅅ’ 부분 지상 녹색천막 철구조물 14㎡를 각 철 거하고, 나) 별지 도면 표시 위 ‘ㄹ’ 토지 부분 37㎡ 및 위 ‘ㅅ’ 토지 부분 14㎡를 인도 하고, 2) 하남시 F 잡종지 542㎡ 중, 가)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 부분 지상 육각형 방갈로 10㎡ 및 같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ㄷ’ 부분 지상 사각형 방갈로 12㎡를 각 철거하 고, 나) 별지 도면 표시 위 ‘ㄴ’ 토지 부분 10㎡, 위 ‘ㄷ’ 토지 부분 12㎡ 및 같은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토지 부 분 중 위 ‘ㄴ’ 토지 부분 10㎡ 및 위 ‘ㄷ’ 토지 부분 12㎡를 제외한 나머지토지 부분 95㎡를 인도하고, 3) 하남시 G 임야 7,455㎡ 중, 가)

별지 도면 표시 36, 37, 38, 39,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ㅇ’ 부분 지상 녹색천막 야외식당 26㎡를 철거하고, 나) 별지 도면 표시 위 ‘ㅇ’ 토지 부분 26㎡를 인도하고,
나. 피고 D은 하남시 E 잡종지 242㎡ 중, 1)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26, 27,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지상 건물본체(식당) 32㎡ 및 같은 도면 표시 28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ㅂ’ 부분 지상 화장실 겸 지하정화조 13㎡를 철거하고, 2) 별지 도면 표시 위 ‘ㄱ’ 토지 부분 32㎡ 및 위 ‘ㅂ’ 토지 부분 13㎡를 인도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).

이 유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는 하남시 E 잡종지 242㎡, 하남시 F 잡종지 542㎡ 및 하남시 G 임야 7,455㎡의 소유자이다.
- 2) 피고 C은 자신의 식당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, ① 하남시 E 잡종지 242㎡ 중, 별지 도면 표시 17, 18, 19, 20, 21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ㄹ’ 부분 37㎡ 지상에 목조 오두막과 같은 도면 표시 32, 33, 34, 35,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ㅅ’ 부분 14㎡ 지상에 녹색천막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, ② 하남시 F 잡종지 542㎡ 중, 같은

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 부분 10㎡ 지상에 육각형 방갈로와 같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ㄷ’ 부분 12㎡ 지상에 사각형 방갈로를 설치하여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,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토지 부분 중 위 ‘ㄴ’ 토지 부분 12㎡ 및 위 위 ‘ㄷ’ 토지 부분 12㎡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 95㎡도 점유하고 있고, ③ 하남시 G 임야 7,45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36, 37, 38, 39,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ㅇ’ 부분 26㎡ 지상에 녹색천막 야외식당을 설치하여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.

3) 피고 D은 하남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데, 피고 D의 위 건물 중 32㎡가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잡종지 24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26, 27,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ㅁ’ 부분 32㎡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, 위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 겸 지하정화조가 원고 소유의 위 E 잡종지 242㎡ 중 같은 도면 표시 28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ㅂ’ 부분 13㎡에 설치되어 있다. [인정사실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내지 영상, 이 법원의 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에 대한 감정축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각 해당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, 원고에게, 피고 C은 주문 제1의 가. 1) 가), 2) 가), 3) 가)항 기재 해당 목조 오두막, 녹색천막 철구조물, 각 방갈로, 녹색천막 야외식당을 각 철거하고, 주문 제1의 가. 1) 나), 2) 나), 3) 나)항 기재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D은 주문 제1의 나. 1)항 기재 건물본체(식당) 부분, 화장실 및 지하 정화조를 철거하고, 주문 제1의 나. 2)항 기재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김행순

별지